무역상무학회지 제25권
2005년 2월 pp. 99~119

논문접수일 2005. 1.26
논문심사일 2005. 1.26
심사완료일 2005. 2. 7

輸出去來에서 商業送狀의 一致性義務에 관한 慣習的 解釋基準*

徐 正 斗**

Ⅰ. 문제 제기
Ⅱ. 상업송장의 관습적 요건
Ⅲ. 엄격일치성과 상당일치성 이론
Ⅳ. 상업송장 일치성의 가이드라인
Ⅴ. 결 언

Ⅰ. 問題 提起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무역거래의 필수적인 제출서류 중의 하나로서,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수출품의 적송장, 명세서, 계산서 겸 청구서이며,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수입품의 구매서로서의 기능을 한다.[1)]

무역계약의 국제적 준거규칙인 INCOTERMS 2000의 13개 모든 정형거래조건에서도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업송장을 제공할 것을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각 제A1항), 또 CISG(유엔통일매매법)에서도 매도인은 물품에 관한 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계약에서 요구된 시기와 장소 및 방

* 이 논문은 2004년도 호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1) Leo D'Arcy et al., *Schmitthoff's Export Trade, 10th ed.*, Sweet & Maxwell, 2000, p. 125.

식에 따라 서류를 인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4조), 수출상은 무엇보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상업송장의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무역계약에서 화환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가 합의된 경우, 상업송장은 대부분의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첨부서류 중의 하나로서, 신용장법(letter of credit law)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동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반드시 신용장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2] 신용장거래에서 상업송장의 의미는 수출상이 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조건을 준수하였다는 명시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다.[3]

문제는 상업송장에 관하여 그동안 학계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무역현장에서는 그 일치성 여부를 둘러싼 당사자간의 분쟁이 아주 빈번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최근 국내의 수출보험공사 UNPAID 사고건에서 필자가 공식의견을 개진한 32건 중 10건 (31.3%)이 상업송장의 하자에 관련된 것이었다.

흔히 상업송장이라고 하면 UCP 500 제37조 c항의 규정이 원용되어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명세와 "엄격히" 일치하여야 하고(엄격일치원칙의 적용), 기타 서류의 명세는 이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기재하여도 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극히 편협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업송장 관련분쟁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이 논문은 상업송장의 기본요건, 특히 신용장거래에서의 엄격일치성(strict compliance)과 상당일치성(substantial compliance) 이론을 비교 정리하고, UCP 500과 ISBP(국제표준은행관습) 등의 국제규칙, 최근의 주요 판례와 ICC 사례 등 관습적 해석기준에 따라 상업송장의 일치성(compliance)[4] 여부에 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봄으로써, 거래당사자간의 송장 관련분쟁의 예방 내지 합리적인 분쟁해결에 일조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

2) UCP 500 Art. 37(c); Sunlight Distribution, Inc. v. Bank of Communications, 94 Civ. 1210 (SDNY Feb. 7, 1995).

3) See UCC Sec. 5-110(a) (extending the beneficiary warranty to the applicant).

4) "Compliance" is the presentation of documents which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individual credits terms and the applicable articles of UCP, but "consistency" occurs when information quoted on one document is transposed onto another stipulated document in the same detail (ICC Publication No 632, R. 11).

Ⅱ. 商業送狀의 慣習的 要件

1. 送狀의 正確性과 眞實性

수출상은 수입상이 부정확한 사항의 삽입을 요구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정확한 상업송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예컨대 수입상이 해외자금유출을 위하여 자국의 외국환규제를 회피하고자 수출상에게 송장금액을 실제의 선적금액보다 과다 기재하여 해외계정에 입금하도록 발행할 것을 매매계약과 신용장에서 요구하였다고 하여, 수출상이 과다청구된 송장을 발행하게 되면 이는 국제적으로 1946년 브레튼-우즈 협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5]

더구나 수출상이 사기로 송장을 발행하게 되면, 이는 은행과 수입상에게는 소송의 사유가 되는 담보위반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신용장법에서는 사기예외규칙(fraud exception rule)을 구성할 수 있다.[6] 설사 수출상이 수입상의 요구에 따라 사기내용을 포함한 송장을 발행하였더라도, 법원은 그러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상이 의무이행을 거절하더라도, 수출상은 법원에 계약상의 어떠한 구제방법에도 호소할 수 없다.[7]

2. 商業送狀의 構成項目

상업송장의 기본형식은 수출상 및 수입상의 명의와 주소, 수입상의 주문일자와 번호, 물품명세, 포장내역, 포장화인과 번호, 가격 등을 기재하고 있어야

---

5) In the United City Merchants (Investments) Ltd. v. Royal Bank of Scotland (The American Accord) (1983) 1 A.C. 168, Mocatta J. held that the contract of sale and purchase was a disguise for exchanging currencies and therefore that the contract and the letter of credit were unenforceable by reason of Article Ⅷ, Section 2(b), of the Bretton Woods Agreements Order in Council 1946.

6)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s, Revised Edition*, Warren · Gorham & Lamont, 1996, p. 1-39.

7) Fielding & Platt Ltd. v. Najjar, (1969) 1 W.L.R. 357 at p. 362 (excepted where the court found that the exporting manufacturer has no knowledge of the illegality under the buyer's law).

하며, 가능하다면 선박명을 포함한 하역내역도 추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상업송장의 가격(price)은 계약에 합의된 정형거래조건별로, 예컨대 EXW 가격, FOB 가격, CIF 가격 등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가의무부 FOB 계약의 경우, 수출상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선지급된 운임, 보험료 및 부가적인 수수료와 요금 등의 항목은 FOB 가격에서 분리된 별도 송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8]

또 CIF 계약의 경우,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송장가격은 전통적인 계산방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즉, Ireland v. Livingston 사건[9]에서 Blackburn 판사는 "송장은 약정된 가격(또는 보험료와 운임을 포함한 실질적인 원가와 비용)을 수화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商業送狀의 內容要件

상업송장은 적어도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연관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즉, 송장은 계약과 실질적으로 상이한, 예컨대 매각된 물품과 다른 물품의 수량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자로 본다.[10]

그러나 송장은 물품을 특정하거나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송장은 다량의 살화물 중의 불확정분(unascertained part)에 대한 수량을 표시하여도 된다. 또 송장은 반드시 계약된 물품명세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호주의 한 사건[11]에서 "150 bales first selection Liverpool wheat sacks"라는 물품의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150 bales Liverpool wheat sacks"라는 약식명세의 송장을 제공하였는데, 매수인은 단지 송장상의 기재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된 바 있다.

반면에 매매계약이 송장상에 특정의 항목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서류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다만 John Martin of London Ltd. v. A.E. Taylor & Co., Ltd. 사건[12]

---

8) A.G. Guest et al., *Benjamin's Sale of Goods, 5th ed.*, Sweet & Maxwell, 1997, p. 1413.

9) (1871) L.R. 5 H.L. 395 at pp. 406-407; ibid., p. 1288.

10) Tamvaco v. Lucas (No. 1), (1859) 1 E. & E. 581; Guest et al., op. cit., p. 1289.

11) Henry Dean & Sons (Sydney) Ltd. v. O'Day, (1927) *39 C.L.R.* 330 at p. 357.

의 경우처럼, 매매계약에서 "원산지 검사번호와 장소"(lodgement number and location of C/O)를 기재한 송장을 요구하였는데, 세관당국의 번호발급이 지연되어 원산지 검사번호가 누락된 수출송장이 제시되었다. 이에 법원은 계약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검사번호란 수출상이 취득한 경우에 제시한다는 의미이므로, 수입상은 이를 이유로 서류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

4. 信用狀去來의 送狀要件

신용장거래에서 상업송장은 매매계약과 신용장상에 명시된 대로의 정확한 물품명세와 기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송장의 물품명세는 수출상이 신용장명세의 확인뿐만 아니라, 어음금액이 정확하고 보험담보액이 적절하다는 표시이며, 나아가 송장의 물품명세는 기타 서류상의 물품명세에 대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송장명세는 반드시 은행에 제시되는 기타 서류상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13] 이들 서류상의 명세는 신용장의 용어를 반복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의 명세와 모순되어서는 아니된다.[14]

예컨대 Talbot v. Bank of Hendersonville 사건[15]에서 신용장은 "101 No. 418 Alarm Units consisting of Part 301, 12 Siren and Remote Switch…"의 상업송장을 요구하였는데, 제시된 송장은 "Dialer ME-310"이란 언급과 함께 다른 방식으로 "It covers 101 No. 418 Alarm Units consisting of Part 301…"이란 표현을 추가하고 있었다. 이에 법원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을 명하였다.

---

12) (1953) 2 Lloyd's Rep. 589 at p. 592.

13) If the documents are not linked by an unambiguous reference to the same goods, the tender is bad (Banque de l'Indochine et de Suez SA v. J.H. Rayner (Mincing Lane) Ltd., (1983) Q.B. 711).

14) SB Int'l, Inc. v. Union Bank of India, 783 SW 2d 225 (Tex. Ct. App. 1989);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n the commercial invoice must correspond with the description in the Credit. In all other documents, the goods may be described in general terms not inconsistent with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n the Credit."(UCP 500 Art. 37(c)).

15) Tenn. App. *496 S.W. 2d,* 548 (1973); Kydon Company Naviera S.A. v. National Westminster Bank Ltd. and Others (The Lena) (1981) *1 Lloyd's Rep.* 68; H.C. Gutterage and M. Ma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Europa Publications Ltd.*, 1984, p. 171; Henry Harfield, *Letters of Credit*, American Law Institute, 1979, p. 101.

Ⅲ. 嚴格一致性과 相當一致性 理論

1. 理論의 接近方向

신용장에 의한 지급이 약정된 경우, 수출상(수익자)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한, 개설은행은 수입상(개설의뢰인)이 선적품의 하자를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더라도 이에 지급하여야 한다.[16]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 이외의 기초적 거래나 무역업체의 관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17]

문제는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해석에 관한 이론이 양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관습법의 중요한 법원을 이루는 ICC의 신용장 통일규칙(UCP)이나 국제표준은행관습[18](ISBP)과 같은 신용장 산업계의 표준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하려는 입장이 있고, 둘째 관습법의 다수 판례에 따라 수익자의 서류는 신용장조건과 엄격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소위 "엄격일치성 규칙"(strict compliance rule)이 있다. 다만 소위 "상당일치성 규칙"(substantial compliance rule), 형평법(equity) 등의 법적 개념으로 통하는 일부 판례도 있다.[19]

신용장법의 엄격성 이탈은 그 고유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용자들의 고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일치성 규칙이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동 이론의 설득력이 줄어들고 있으며,[20] 특히 수익자 지향적인 엄격일치성 규칙은 최근 문면상 일치된 서류의 사기(fraud)가 빈발하고

16) The bank must pay even though the applicant alleges fraud, if, in fact, there is no fraud (Unifirst Fed. Sav. Bank v. American Ins. Co., 905 F 2d 208 (8th Cir. 1990).

17) The bank has no duty to notify the applicant before paying the beneficiary that presents conforming documents, notwithstanding facts that the underlying transaction required the beneficiary to notify the applicant of its draw (Five Star Parking v. Philadelphia Parking Auth., 703 F. Sup. 20 (ED Pa. 1989).

18)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edited by ICC Banking Commission, Oct. 2002.

19) One commentator argues, however, persuasively that the substantial compliance rule of contract law does not apply to the beneficiary-issuing bank setting as a matter of contract law. See Note, "Letters of Credit: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ocumentary Compliances," *50 Fordham L. Rev.* 843 at p. 863 (1982).

20) Green, "Letters of Credit and the Computerization of Maritime Trade," *3 Fla. International Law Journal* 221 (1988).

있으나, 권리포기(waiver)나 금반언(estoppel)의 법리를 유발할 수 있고[21] 사기서류의 수리거절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2. 嚴格一致性 規則

신용장의 관습법과 다수 판례는 엄격일치성 규칙을 지지하고 있다.[22] 예컨대 미국의 North Woods Paper Mills, Ltd. v. National City Bank 사건[23]에서 수익자가 실제 금액보다 낮은 환어음과 송장을 제시한 후 별도의 손실보전을 위한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은행은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수리거절하였으며, 법원은 은행의 지급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일찍이 Equitable Trust Co. v. Dawson Partners 사건[24]에서 Sumner 경이 천명하고 엄격일치성의 기준으로 알려진 금언, 즉 "서류는 거의 동일하거나 또한 정당하여야 함에는 어떠한 여지가 있을 수 없다."(there is no room for documents which are almost the same, or which will do just as well.)라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National City Bank v. Seattle National Bank 사건[25]에서 법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물품[설탕] 또는 신용장이 기초하고 있는 다른 산업에 대하여는 거의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영국의 경우도 J.H. Rayner & Co. v. Hambros Bank, Ltd. 사건[26]에서 송장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과 동일하게 "1,400 tons Coromandel groundnuts"라고 기재되었으나, 선화증권은 물품명세란에 "machine shelled groundnut kernels"의 기재와 함께 난외에 "OTC C.R.S. Aarhus"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에 법원

---

21) "If the Issuing Bank determines tha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not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it may in its sole judgment approach the Applicant for a waiver of the discrepancies."(UCP 500 Art. 14(c)); "Such notice must state all discrepancies in respect of which the bank refuses the document…"(UCP 500 Art. 14(d)(ii)).

2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5-109, an issuer shall honor a presentation that, as determined by the standard practice referred to in subsection (e), appears on its face strictly to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tter of credi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5-113 and unless otherwise agreed with the applicant, an issuer shall dishonor a presentation that does not appear so to comply."(UCC Sec. 5-108(a)).

23) 121 NYS 2d 543 (Sup. Ct. 1953); Dolan, op. cit., p. 6-9.

24) Equitable Trust Co. v. Dawson Partners, (1927) 27 Lloyd's List L.R. 49.

25) National City Bank v. Seattle National Bank, 121 Wash. 476, 209 P. 705 (1922).

26) J.H. Rayner & Co. v. Hambros Bank, Ltd., (1942) 2 All E.R. 694 (CA).

은 신용장이 송장과 선화증권 모두 완전한 물품명세를 요구한 것이므로, 이러한 제시는 하자있고 불일치한 명세의 서류는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7]

기타 엄격한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서류는 하자로 본다. 예컨대 i) 신용장은 "California Whites Petaluma extras"를 요구하였으나 송장상에 "Petaluma Ranch extras"라고 기재된 경우,[28] ii) 신용장은 "ladies sweaters, dresses, pants and skirts"를 언급하였으나 송장상에 "woolen knitwears"라고 언급된 경우,[29] iii) 신용장은 "100% acrylic yarn"을 요구하였으나 송장상에 "imported acrylic yarn"라고 기재된 경우[30] 또는 iv) 신용장 명세는 "52 ceiling fan"이나 송장명세가 "52 + ceiling fan"인 경우[31] 등을 하자로 본다.

요컨대 다수 판례의 지지를 받는 엄격일치성 규칙은 개설의뢰인이나 매수인의 이익보호보다는 신용장 자체의 일반적·상업적 본질에서 연유된 것이며, 이 규칙은 신용장의 상업적 목적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32]

3. 相當一致性 規則

상당일치성 규칙이란 엄격일치성의 법체계를 거부하고, 소위 "상당성"(substantiality), "형평법"(equity) 등의 명제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예컨대 Banco Espanol de Credito v. State Street Bank & Trust Co. 사건[33]과 Flagship Cruises, Ltd. v. New England Merchants National Bank 사건[34]의 판례가 대표적이다.

첫째의 Banco Espanol 사건[35]에서 신용장은 "The goods are in conformity with the order."라는 기재의 매수인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당초의 주문

27) Article of 37(c) of the Uniforms Customs would yield a different result.
28) Portuguese-Am. Bank v. Atlantic National Bank, 193 NYS 423 (1922).
29) Oriental Pac., Inc. v. Toronto Dominion Bank, 357 NYS 2d 957 (Sup. Ct. 1974).
30) Courtaulds N. Am. v. North Carolina Nat'l Bank, 528 F 2d 802 (4th Cir. 1975).
31) Davidcraft Corp. v. First National Bank, No. 83 C. 5481 (ND Ill. Jan. 6, 1986).
32) Kozolchyk, "Strict Compliance and the Reasonable Document Checker", *56 Brooklyn L. Rev.* 45 (1990).
33) 385 F 2d 230 (1st Cir. 1967); Dolan, op. cit., p. 6-46.
34) 569 F 2d 699 (1st Cir. 1978); ibid., p. 6-49.
35) Banco Espanol de Credito v. State Street Bank & Trust Co., 385 F 2d 230 (1st Cir. 1967).

된 제목은 "stock sheets"(재고서)이었기 때문에 수익자가 "order"(주문서)라는 표현 대신에 "whole … [was] found conforming to the conditions stipulated on the Order-Stock sheets."라는 기재의 검사증명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법원은 검사증명서는 일치된 서류라고 판시하였다. 신용장에서 단순히 검사증명서가 요구된 경우, 은행은 UCP 500 제21조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36]

둘째의 Flagship 사건[37]도 수익자 서류는 신용장의 용어를 그대로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함으로써 상당일치성 규칙을 대표하고 있다. 즉, 신용장은 "환어음"(draft)이 …합의서에 관련 있음을 기재한 수익자 진술서를 요구하였는데, 실제의 수익자 진술서에는 "신용장"(letter of credit)이 …합의서에 관련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법원은 환어음이 근거한 신용장 전체가 …합의서에 관련 있기 때문에, 수익자 진술서는 신용장조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기타 Exotic Traders Far East Buying Office v. Exotic Trading USA, Inc. 사건[38]에서도 앞의 Banco Espanol 사건을 적용하여 서류심사자가 오해하지 아니할 정도의 이탈을 허용하였다. 즉, 본 사건에서 신용장은 "FOB Seoul"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상업송장은 "FOB Korea" 인도조건을 기재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기타 서류(AWB, C/O 등)상 물품이 "Seoul"에서 적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어느 누구도 오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히 일치하다고 판시하였다.

상당일치성 규칙의 핵심은, 예컨대 수익자가 실수로 "i"자의 윗점을 찍지 아니하였거나 "t"자의 가로 선을 긋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수입상과의 계약에서 이익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명분에서 출발한 것이다.

---

36) Article 21 of UCP 500 provides some of that guidance that for the documents other than transport documents, insurance documents, and commercial invoices, the document examiner may accept a document that fails to satisfy the requirements concerning data content and certificate.

37) Flagship Cruises, Ltd. v. New England Merchants National Bank, 569 F 2d 699 (1st Cir. 1978).

38) 717 F. Supp. 14 (D. Mass. 1989).

Ⅳ. 商業送狀 一致性의 가이드라인

1. UCP 500과 最近 判例

UCP 500 제37조 c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신용장명세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must correspond with), 기타 서류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최근의 판례 흐름을 보면, i) Accord Samuel Rappaport Family Partnership v. Meridian Bank 사건[39]에서, 송장상의 용어는 상세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송장 명세에 관한 다소의 이탈 여지를 두었으며, ii) Astro Exito Navegacion SA v. Chase Manhattan Bank NA 사건[40]의 경우 신용장에서 해상선박을 지정하고 "to arrive under own power… as is and always safely afloat and intact."라는 추가 설명이 있었는데, 이러한 설명은 물품명세의 일부가 아니므로 상업송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시되었으며, iii) Axxess, Inc. v. Rhode Island Hosp. Trust National Bank 사건[41]에서 송장상의 물품명세란을 벗어난 별도의 용어는 하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된 바 있다.

그러나 Sunlight Distribution, Inc. v. Bank of Communications 사건[42]의 경우처럼 신용장 명세에도 없으며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요소에 관한 불필요하고 오해를 야기시키는 정보가 포함된 송장은 하자로 본다고 판시된 바 있다.

기타 UCP 500 제37조 a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장 당사자는 반드시 신용장의 수익자가 개설의뢰인 앞으로 직접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43] 또 동조 b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장금액은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은행은 신용장에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장금액을 초

39) 26 UCC Rep. Serv. 465 (Pa. CP 1994); 26 UCC Rep. Serv. 474 (Pa. Super. 1995).
40) (1986) 1 Lloyd's Rep. 455 (QB).
41) 15 UCC Rep. Serv. 2d 1011 (D. Mass. 1991).
42) 94 Civ. 1210 (SDNY Feb. 7, 1995); Dolan, op. cit., p. 6-13, n. 50.
43) There is an exception to this rule, in UCP 500 Art. 48 (the transferable credit).

과하여 발행된 송장의 수리 또는 거절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44]

2. ISBP와 ICC 意見(3~5절 同)

2002년 10월 ICC가 제정한 국제표준은행관습(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 ISBP)은 UCP 규정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opinions) 및 결정(decisions) 등과 일관성이 있다. ISBP는 UCP상의 관습을 실무가들이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45] 특히 송장에 관하여는 송장의 정의·당사자·물품명세·기타 관련문제 등의 상세한 국제표준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을 중심으로 서류심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1> 신용장에서 "송장"(invoice)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송장을 포함하지만, 가송장(provisional invoice)이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ISBP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송장"을 요구한 경우, 상업송장·세관송장·영사송장 등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송장도 제시할 수 있고, 상업송장을 요구한 경우 단순히 "송장"이란 제목으로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가송장이나 견적송장 등은 신용장에서 이를 특별히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수리하지 아니한다.

가송장이나 견적송장은 본질적으로 매매계약이나 신용장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예비적인 정보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서류는 신용장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제시서류로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신용장에서 "견적송장 제 xxx 호에 따른 물품"(goods as per pro- forma invoice No.…)을 명시하더라도, 상업송장상에 이와 동일한 문언이 나타나 있는 한 은행은 별도의 견적송장을 요구하거나 그 기재내용을 심사하지 아니한다. 은행의 의무는 제시된 상업송장상에 견적송장에 관한 정확한 참조문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46]

그러나 상업송장이 신용장에서 요구된 견적송장의 번호를 잘못 인용하거나

---

44) Oriental Pac., Inc. v. Toronto Dominion Bank, 357 NYS 2d 957 (Sup. Ct. 1974).

45)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Publication No. 645*, 2003. 1, p. 3.

46)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ublication No. 459*, 1989. 2, Case No. 133;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ublication No. 489, 1991. 12, Case Nos. 266 and 268.

완전히 다른 번호를 기재하였다면, 이는 하자있는 것으로 본다.[47]

3. 商業送狀의 當事者

<기준2> 송장은 신용장 수익자가 발행하였음이 문면상 나타나 있어야 하지만, 연락처의 표기까지 완전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즉, ISBP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송장은 반드시 신용장에서 지정한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이 문면상 나타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UCP 500 제37조 a항 i호).

예컨대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X native produce …"인 경우 상업송장의 송화인란에 "X national native produce …"라고 단어 "national"을 하나 추가하여 발행하거나,[48] 또는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Company T"인 경우 상업송장을 T 상사와 같은 그룹 내의 자회사인 "ABC division"의 명의로 발행하거나 전혀 다른 당사자의 명의로 발행하는 것은 은행의 지급거절을 정당화하는 신용장조건의 불일치로 본다.[49]

그러나 수익자 주소의 일부를 구성하는 텔렉스번호 또는 팩스번호 등은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또 이를 기재한 경우에도 신용장의 그것과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 즉, 수익자의 텔렉스번호나 팩스번호 등의 표시는 신용장과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예컨대 신용장의 수익자가 "XXX S.A. Schweiz, Country Z"인 경우, 이에 요구된 팩스전송문의 발행인 주소를 "XXX S.A. Schweiz, Filial City S"라고 기재하는 것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50]

<기준3> 송장의 상대방은 반드시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연락처의 표기까지 완전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즉, ISBP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송장은 신용장이 양도된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신용장의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은행은 물품이 아닌 서류만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송장상의 당사자가 신용장의 당사자와 일치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이들간의 기초적인 계약관계를 확신할 수 있다.[51] 다만 개설의뢰인

47) ICC, *Collected Opinions 1995-2001, Publication No. 632*, 2002. 6, R. 142.
48) ICC Publication No. 632, R. 83.
49) ICC Publication No. 632, R. 223; ICC Publication No. 489, Case No. 261.
50) ICC Publication No. 632, R. 233. Minor differences in the name and addresses of the beneficiary, or differences in punctuation or in the writing of the vessel's name with a voyage number following it would not be a discrepancy.

의 텔렉스번호나 팩스번호 등의 표시는 신용장과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신용장상의 개설의뢰인 주소가 "Company F., CZ Strasse 2, City A"(Country G)라고 기재된 경우, 송장을 비롯한 모든 서류상에 수화인 주소를 "Company F., CZ Strasse 15, City A, Country D"라고 국가를 달리 표기하는 것은 거절사유가 될 수 있다.[52]

4. 商業送狀의 物品明細

<기준4> 송장의 물품명세는 반드시 신용장명세와 일치하여야 하지만, 여기에 완전일치성(mirror image)의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ISBP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송장의 물품명세는 반드시 신용장명세와 일치하여야 하지만, 이는 신용장과 대칭적으로 완전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송장 내의 여러 위치에 있는 기재사항을 조합하여 일치하여도 된다. ISBP의 규정은 송장명세에 관하여 상당일치성 규칙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CC 은행위원회의 다수의견도 이를 견지하고 있다. 예컨대 신용장에서 물품명세를 "white refined sugar … origin - Country T"라고 명시한 경우, 상업송장은 신용장명세의 형식이나 배열과 달리 물품명세란에 "origin - Country T"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화인란에 "Country T white refined sugar …"라고 기재하여도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신용장명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53] 또 신용장의 물품명세가 "ABC"라고 할 경우, 송장의 물품명세란에 당해 물품의 성분까지 추가하여 "XYZ (ABC)"라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다.[54]

기타 서류상의 물품명세는 이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표기할 수 있다. 예컨대 포장명세서나 수익자증명서가 송장명세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아니하고 물품수량, 분류번호, 송장번호(invoice No.) 등의 사항만을 기재한 경우, 그 자료내용이 상업송장과 모순되지 아니하게 연계되어 있으면 이를 UCP 500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한 기타 서류로서 수리하여야 한다.[55]

---

51) UCP 500 Art. 37(a)(ii); ICC Publication No. 489, Case No. 261.
52) ICC Publication No. 632, R. 229.
53) ICC Publication No. 632, R. 230; UCP 500 Art. 37(c).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n the commercial invoice be exact perfectly.
54) ICC Publication No. 632, R. 234.
55) ICC Publication No. 632, Rs. 222 and 228; UCP 500 Art. 21.

그러나 신용장의 물품명세가 "Pakistanese blue poppyseed"라고 요구된 경우, 품질/중량증명서의 물품명세가 신용장 및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에 모순되게 "Pakistanese (coloured) blue poppyseed"라고 단어를 하나 추가하거나,[56] 또는 신용장의 물품명세가 "Iron ore concentrate"라고 요구된 경우, 보험증권의 물품명세가 송장에도 없는 표현을 추가하여 "Koolyanobbing Lump Iron Ore"라고 기재하는 것은 은행의 거절사유가 될 수 있다.[57]

<기준5> 송장의 물품명세는 반드시 실제로 선적된 물품의 종류만을 기재하고 있어야 한다. 즉, ISBP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송장의 물품명세는 반드시 실제로 선적된 물품의 종류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 신용장에 기재된 바의 전체 물품명세를 표시하는 송장은 실제로 선적된 종류를 기재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수리될 수 있다. 즉, 신용장에서 여러 종류의 물품이 요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송장에 물품명세의 일치만을 위하여 실제로 선적되지 아니한 종류까지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컨대 신용장의 물품명세에 i) X 상품 - 10 상자, ii) Y 상품 - 5 상자가 요구된 경우, 분할선적의 금지가 없는 한 상업송장에는 실제로 선적된 종류의 X 상품 - 4 상자만을 기재하여도 수리되지만, 다음 차례에 선적할 Y 상품이나 신용장에 없는 Z 상품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58]

<기준6> 송장은 반드시 선적된 물품의 가액(value)을 기재하여야 하고, 단가(unit price)와 통화단위(currency), 기타 신용장에서 요구된 할인액이나 공제액 등은 신용장과 일치하게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즉, ISBP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송장은 반드시 선적된 물품의 가액을 입증하고 있어야 하고, 물품의 단가(있을 경우)나 통화단위는 신용장과 일치하여야 하며, 또 신용장에 기재된 모든 할인액이나 공제액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신용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선수금의 공제액, 할인액 등도 표시할 수 있다.

예컨대 신용장에서 수출입 선수금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수익자가 30 % 선수금의 공제액을 표시하여 상업송장을 발행하거나, 또는 신용장에서 CFR 가액만 명시된 경우, 상업송장에 FOB 가액과 운임 및 신용장에 없는 영사비용(consular fee)까지 합산하여 CFR 가액을 표시하는 것은 하자가 아니다.[59]

---

56) ICC Publication No. 632, R. 220; UCP 500 Arts. 13(a) and 37(c).
57) ICC Publication No. 632, R. 227; UCP 500 Art. 37(c).
58) ICC Publication No. 459, Case No. 132.
59) ICC Publication No. 632, R. 224; Publication No. 489, Case No. 259.

그러나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업송장의 금액은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물품대금 이외의 부대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신용장금액을 초과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그 초과된 송장금액의 수리 여부는 전적으로 은행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 결정은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60]

<기준7> 송장은 반드시 신용장에 명시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과 그 준거규칙을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어야 한다. 즉, ISBP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CIF 등의 정형거래조건이 물품명세나 금액란에 기재된 경우, 송장은 이와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준거규칙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와 동일한 연도의 규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부과금이나 비용은 신용장에 기재된 정형거래조건에 따른 가액의 범위내에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예컨대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신용장의 물품명세에 "FOB Shanghai"라는 요구가 있는 경우, 이는 계약의 주요 부분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므로, 상업송장에서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을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절사유가 된다. 또 신용장의 물품명세에 정형거래조건이 "CIF Singapore Incoterms 2000"이란 현재 규칙으로 요구된 경우, 상업송장에서 준거규칙의 연도표시 없이 "CIF Singapore Incoterms"라고만 명시하는 것도 하자가 된다.[61]

그러나 신용장의 물품명세에 정형거래조건이 "CFR Vancouver, WA, USA Port"라고 요구된 경우,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에 "CFR Vancouver, WA"라고 명시하는 것은 "USA Port"가 누락되었더라도 "WA"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항을 전제한 정형거래조건으로서 이를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62]

또 신용장의 물품명세에 "FOB Shimonoseki"라고 요구된 경우, 송장의 물품명세에 "FOB Japan"이라고만 명시하면 이는 신용장이 요구하는 특정항구를 지칭하지 아니하므로 하자라고 볼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제시된 선화증권상에 선적항이 "Shimonoseki, Japan"으로 명시되어 있는 한, 동 송장에 있는 정형거래조건의 기재는 하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ICC의 다수의견이다.[63]

---

60) ICC Publication No. 489, Case No. 260; UCP 500 Art. 37(b); ISBP Para. 69.
61) ICC Publication No. 632, R. 222; Example on the ISBP Para. 65.
62) ICC Publication No. 632, R. 226.
63) ICC Publication No. 632, R. 221; ISBP Para. 62.

5. 商業送狀의 其他 問題

<기준8> 송장은 신용장에서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서명이나 일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ISBP 제66조). 즉, 환어음·운송서류·보험서류 등의 제출서류는 신용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본질적으로 서명과 일자가 필요하지만, 수익자가 직접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하는 송장은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64]

다만 신용장에서 "signed invoice in 3 copies"와 같이 서명을 특별히 요구한 경우, 적어도 1통의 송장은 서명된 원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65]

<기준9> 송장상의 수량, 중량 및 용적의 표시는 기타 서류상에 나타난 표시와 상호 모순되어서는 아니된다. 즉, ISBP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송장상에 표시된 물품의 수량·중량·용적은 결코 선화증권이나 수량/중량증명서 등의 기타 서류상의 수량과 상호 불일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컨대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신용장명세가 "5,000 MT (± 5 pct) …"로 요구되고 선화증권의 수량이 "4,787.650 MT"로 제시된 경우, 송장의 물품명세란에 "5,000 MT (± 5 pct) …"라고 표시하더라도 수량란에 선화증권과 일치한 "4,787.650 MT"를 표시하는 한, 이를 하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66] 그러나 신용장에서 상업송장이 5통 요구된 경우, 물품의 중량표시가 원본 송장을 포함한 4통에는 "85.162 MT", 나머지 1통에는 "88.162 MT"라고 상호 불일치하게 나타난 것은 하자로 본다. 송장의 원본과 사본은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67]

<기준10> 송장은 결코 초과된 선적수량이나 신용장에 요구되지 아니한 상품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ISBP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송장은 결코 i) 초과된 선적수량(UCP 500 제39조 b항의 경우 제외), 또는 ii) 무료표시가 있더라도 신용장에 없는 상품(견본, 광고물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컨대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신용장의 물품명세가 "Cars model

64) UCP 500 Art. 37(a)(iii); ISBP Paras. 13 and 39.

65) ISBP Para. 33(b). "Credits that require multiple document(s) such as 'duplicate', 'two fold', 'two copies' and the like, will be satisfied by the presentation of one original and the remaining number in copies except where the document itself indicates otherwise."(UCP 500 Art. 20(c)(ii)).

66) ICC Publication No. 632, R. 231; UCP 500 Arts. 13(a) and 37(c).

67) ICC Publication No. 489, Case No. 202; UCP 500 Art. 13(a).

T"인 경우,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에 "Cars model T"라고 기재하고 동일 물품에 관한 세부설명을 추가하는 것은 하자가 아니지만, 기타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아니한 견본 "model Y"에 관한 명세를 추가하는 것은 하자로 본다.[68]

<기준11> 송장의 수량표시는 신용장에서 요구된 물품수량으로부터 5% 과부족이 허용된다. 즉, ISBP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i) 물품수량의 과부족을 금지하거나, 또는 ii) 포장단위나 개별품목의 수량표시가 없는 한, 송장에서의 수량표시는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다만 송장에서 5%의 수량초과가 있더라도 환어음 금액은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69]

예컨대 신용장에서 물품수량과 함께 "up to"나 "maximum" 등의 수량초과만을 금지한 경우, 표시된 숫자에서 5%까지 수량 부족된 송장은 허용된다.[70]

<기준12> 송장금액(invoice amount)은 분할선적이 금지된 경우도 물품수량과 단가의 감축이 없는 한, 5% 이내의 부족된 오차가 허용된다. 즉, ISBP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할선적이 금지된 경우, 수량의 전체가 선적되고 신용장에 기재된 경우의 모든 단가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한, 송장금액에서 5% 부족한 허용오차는 수리될 수 있다. 신용장에서 어떠한 수량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장은 전체의 수량을 커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71]

예컨대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신용장금액이 "USD 396,000 CIF"로 요구된 경우, 송장금액으로서 운임·보험료를 합하여 "USD 376,000 CIF" (-5% 이내)라고 기재하더라도 물품수량과 단가가 일치하는 한 무방하다.[72]

<기준13> 송장의 원본과 사본은 반드시 신용장에 요구된 숫자대로 제시되어야 한다(ISBP 제71조). 가끔 신용장의 문언으로는 그것이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는지의 여부, 또는 동 요구가 원본 또는 사본에 의하여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예컨대 i) "one invoice", "invoice in 1 copy" 등의 요구는 송장 원본 1통을 제시하여야 하고, ii) "invoice in 4 copies" 등은 원본을 1통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숫자를 사본으로 제시하고,

---

68) ICC Publication No. 459, Case No. 132.
69) This paragraph of ISBP has a connection with sub-Article 39(b) of UCP 500, excepting the former confines the purpose of application to the invoice.
70) ICC Publication No. 459, Case No. 137; ICC Publication No. 489, Case No. 270.
71) This paragraph of ISBP is consistent with sub-Article 39(c) of UCP 500, but the former is related to the invoice, whereas the latter is related to the drawings.
72) ICC Publication No. 459, Case No. 134.

iii) "one copy of invoice" 등은 사본 1통의 제시로도 충족될 수 있다.[73]

<기준14> 신용장에서 기간과 수량이 지정된 할부선적을 요구한 경우, 송장은 반드시 지정된 할부계획에 따라 선적·작성하여야 한다(ISBP 제72조). 신용장에서 지정된 기간내의 할부선적을 요구하였는데, 어떠한 할부분이 각 허용된 기간내에 선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신용장은 해당 할부분과 이후의 모든 할부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개설은행이 이후 할부분에 대한 승인을 통지하고 지급하면, 신용장은 이후 할부분에 대하여 다시 유효하게 회생한다.[74]

V. 結 言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거래에서의 상업송장은 기본적으로 정확성과 진실성을 갖추어야 하고, 거래의 관습상 요구되는 구성항목과 내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신용장거래의 경우 상업송장은 신용장조건과 그 준거규칙에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해석은 양립되어 있다.

즉, 상업송장의 일치성에 관한 해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엄격일치성 규칙"과 "상당일치성 규칙"으로 대별되는데, 엄격일치성 규칙은 일찍이 Dawson 사건[75]에서 Sumner경이 천명한 금언에 따라 미국 통일상법전(UCC) 등 관습법과 다수 판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 규칙은 신용장의 상업적 본질에서 연유하여 그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반면 상당일치성 규칙은 서류의 기재가 현실적으로 신용장조건과 일어일구까지 완전일치할 수 없다는 신용장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ICC의 UCP 500, ISBP, ICC 의견 및 일부 판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신용장법의 엄격성 이탈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용장의 고유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용자들의 고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논자의 판단으로는, 상업송장의 일치성 해석문제도 신용장의 본질을

73) ICC Publication No. 632, R. 111; ISBP Para. 33.

74) ICC Publication No. 632, R. 290; UCP 500 Art. 41.

75) In the early case, Equitable Trust Co. v. Dawson Partners, (1927) 27 Lloyd's List L.R. 49, the famous dictum of Viscount Sumner is "there is no room for documents which are almost the same, or which will do just as well."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계의 합의된 표준관습(standard practice)을 존중하여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부당한 이익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2002년 10월에 제정된 ICC의 ISBP 규정은 그동안의 많은 UNPAID 논쟁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본다.

끝으로 본고의 제4장에서 송장의 정의 · 당사자 · 물품명세와 기타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은 ISBP 규정과 ICC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제시해 본 것이므로, 장차 신용장 실무가들에게 유익한 판단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參考文獻

Dolan, John 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s, Revised Edition*, Warren · Gorham & Lamont, 1996.

D'Arcy, Leo et al., *Schmitthoff's Export Trade, 10th ed.*, Sweet & Maxwell, 2000.

Green, "Letters of Credit and the Computerization of Maritime Trade," *3 Fla. Int'l Law Journal* 221 (1988).

Guest, A.G. et al., *Benjamin's Sale of Goods, 5th ed.*, Sweet & Maxwell, 1997.

Gutterage, H.C. and Magrah, M.,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Europa Publications Ltd.*, 1984.

Harfield, Henry, *Letters of Credit, American Law Institute*, 1979.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ublication No. 459*, 1989. 2.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ublication No. 489*, 1991. 12.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Publication No. 565, 1997. 7.

ICC, *More Queries and Responses on UCP 500 (1997)*, Publication No. 596, 1998. 6.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8-1999)*, Publication No. 613, 2000. 6.

ICC, *Collected Opinions 1995-2001*, Publication No. 632, 2002. 6.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Publication No. 645*, 2003. 1.

Kozolchyk, "Strict Compliance and the Reasonable Document Checker", *56 Brooklyn L. Rev.* 45 (1990).

Müller, René, "The ISBP document, as it stands, does contain definitions that are contradictory to official Opinions", *DCINSIGHT, Vol. 9 No. 1*, 2003. 1-3.

Shaw, Martin, "It will be a brave or foolhardy bank which in future takes no account of ISBP", *DCINSIGHT, Vol. 9 No. 1*, 2003. 1-3.

Smith, Donald R., "ICC Project o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6 No. 3*, Summer 2000.

Yang, Young Hwan and Seo, Jung Doo, *Case Studies on Letters of Credit*, Sam Young Publishing Co., 1995.

ABSTRACT

Customary Criteria on the Compliance Duty of Commercial Invoice in the Export Trade

Seo, Jung Doo

Recently, the export claims related to the compliance of the commercial invoice are increasing.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basic requirements of the invoice, and two theories on the document compliance, i.e., the strict compliance and the substantial compliance, and to analyse the substantial compliance of the invoice through some recent cases under the UCP 500, ICC's opinions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As regards the compliance of the invoice, a majority of the cases has held that it must comply strictly with the credit terms ("strict compliance rule"). However, a minority of courts and credit industry standards such as the UCP and ISBP published by ICC take a different approach, infusing the credit law notions such as equity, "substantial compliance rule", etc.

The extent of the substantial compliance of the invoice is particularly explained in the above-mentioned invoice paragraphs of the ISBP and supported by a large number of ICC's official opinions. Especially, the parties and descriptions in the invoice must correspond with those in the credit, being not inconsistent with the other documents. Other issues related to invoices such as a tolerance of the quantity, the amount, and the number of originals or copies, etc. must comply with the credit terms substantially.

Key words : Invoice, Compliance, Description, ISBP, UCP, ICC opinion